

[수정안포함]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조 제1호중 “관내대학장”을 “관내대학총·학장”으로 하고, “고등학교장” 다음에 “기타학술연구기관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2호중 “관내대학장”을 “관내대학총·학장”으로 하고 “한국에총부천시부장”다음에 “기타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3호중 “관내대학장”을 “관내대학총·학장”으로 하고 “고등학교장” 다음에 “기타 사회교육단체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4호중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을 “환경복지부문”으로 하고 구청장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부천시지부,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대표”를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로 하고, 동조 제5호중 “부천시체육가맹단체회장” 다음에 “생활체육단체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6호중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부문”으로 하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장” 다음에 “종업원 100인 이상 중사업체의 장, 노동조합의대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4년 6월 8일
- 나. 제 안 자 : 박상규의원의외 9인
- 다. 회부일자 : 1994년 6월 8일
- 라. 상정및의결일자 : 1994년 6월 8일
- 마. 재회부일자 : 1994년 6월 15일
- 바. 재상정및의결일자 : 1994년 6월 2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으로 사무를 이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해결의 도모
- 헌행조례에 의하면 법 제108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문제가 있음.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근거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을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 답변에 효율적인 현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본 개정안을 이제야 개정하는 사유는?		○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시의 행정·업무가 일선 행정기관인 구로 이관되는 추세이기 때문임.	
○ 법 제106조 삭제하는 이유는?		○ 기구 개편에 의하여 출장소 기구가 증설될 때 조례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조례에 삭제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본 개정안을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 법 제106조 출장소 존치여부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출장소가 신설 시 조례개정키로 하고 현재 조례개정 시 삭제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277
의 결 년 월 일	94. 6. 27 (제29회)

제출년월일 : 1994. 6. 22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사무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사무의 하부기관 위임을 통하여 행정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많은 행정사무가 일선기관으로 이관되어 처리토록함으로써 기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일선 하부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 일선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문제가 있음.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근거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 과장·동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의 의회 출석, 답변에 효율적인 현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헌행과 같음)	제1조(목적)(헌행과 같음)
제2조(범위) (생략)	제2조(범위) (헌행과 같음)	제2조(범위) (헌행과 같음)
1. (생략)	1. (헌행과 같음)	1. (헌행과 같음)
2. (생략)	2. (헌행과 같음)	2. (헌행과 같음)
3. <u>법 제104조 내지</u> <u>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u>	3. (헌행과 같음)	3. <u>법 제104조 및 제105조</u> <u>제107조</u> -----
4. <u>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u> <u>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u> <u>직급 이상인 자</u>	4. <u>구청장, 부구청장</u>	4. <u>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u> <u>하부행정 기관의장</u>
5. (신설)	5. <u>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u> <u>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u> <u>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u> <u>인 자</u>	5. (삭제)

[수정안 포함]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04조 및 제105조, 제107조'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 기관의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4년 6월 18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4년 6월 20일

라. 상정일자 : 94년 6월 26일(제4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4613호, '93. 12. 27)에 따라 시장의 임용권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소의 간소화를 도모함.

나.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임용권 위임조항 신설)